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26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용혜인 · 박선원 · 이용선
박희승 · 서미화 · 윤종오
남인순 · 박수현 · 박지혜
장종태 · 김준형 · 한창민
박정현 · 손 솔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17일에야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현재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조사 지연으로 인해 향후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대규모 인재라는 이번 참사의 특

정상 조사대상 공무원이 징계시효가 만료되길 기대하며 남은 기간 조사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켜 진상규명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배·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기간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은 종합보고서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안 제32조의3 신설).

다.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배·보상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6까지 등).

라. 치유휘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등).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10·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된다.

제32조의3(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조사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때와 조사를 종료한 때,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사대상 기관·시설·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의 통보를 받은 기관·시설·단체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시설·단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50조의3에 따른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4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53조의4에 따른 임시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0조의3(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로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0조의4(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배상·보상 업무 및 피해자 구제·지원”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후단 중 “지원금”을 “배상금·위로지원금, 보상금 및 지원금(이하 “지원금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원금”을 “지원금등”으로, “2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원금등”을 “지원금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지원금액 등”을 “지원금등”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3(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4(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3조의5(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52조제3항의 지급결정 및 제53조의4의 임시지급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53조의6(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

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60조제1항 중 “1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제6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치유�휴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2조의2(공소시효의 정지)	10	· 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제 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정지된다.
<u><신 설></u>		제32조의3(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①	조사위원회는 제 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을 한 때와 조사를 종료한 때, 제 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사대상 기관 · 시설 · 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 결정의 통보를 받은 기관 · 시설 · 단체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 · 시설 · 단

	<u>체가 정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권고를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u>
<u>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①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u> <u>1.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u> <u>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u> <u>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u>	<u>제50조(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신 설>

제50조의2(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피해자 해당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2.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제50조의3에 따른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에 관한 사항

5. 제50조의4에 따른 손실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

6. 제53조의4에 따른 임시지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신 설>

7.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0조의3(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지급대상) ① 배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0·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법」,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2. 국가가 제1호의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위변제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원

② 국가는 「민법」 제469조제1항에 따라 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로

<신 설>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지원금 지급의 기준·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0조의4(손실의 보상)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직무로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2.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으로 인하여 영업 손실 등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의 기준, 대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
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
다.

1. · 2. (생 략)

3. 생활지원, 의료지원, 심리상
담 및 심리치료 등 관련 분
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 5. (생 략)

② ~ ⑤ (생 략)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
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
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
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
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
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

-----.

--.

1. · 2. (현행과 같음)

3. 배상·보상 업무 및 피해자
구제·지원-----

4.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
----배상금·위로지원금, 보상
금 및 지원금(이하 “지원금등”
이라 한다)---.

② -----
-----지원금등-----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 인정 여부 및 지원금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심의·의결하는 데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 지원금액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신설>

종료된 후 6개월 ---. -----

--.

③ -----

-----지
원금등-----.

-----.

④ -----

-----.

-----지원금등-----

--.

⑤·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등의 지급 등) ①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결정서

<신 설>

<신 설>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
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
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
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의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신청인이 배상금·위로지원
금 및 보상금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의위원회에 하지 아니한 경
우 이 법에 따른 배상금·위로
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
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3(지급결정 동의의 효
력)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
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 결정
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
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4(임시지급 및 정산) ①

<신 설>

<신 설>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인의 서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배상금의 일부를 임시로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상금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3조의5(국가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국가는 제52조제3항의 지급결정 및 제53조의4의 임시지급 결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신청인의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53조의6(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배상금 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u>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u> <u>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u>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임시로 지급받은 금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배상금보다 큰 경우 그 차액 및 「민법」에서 정한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받은 날부터 배상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까지의 이자는 제외한다.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제60조(근로자의 치유휴직) ①
사업주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10·29이	-----
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	-----
직(이하 “치유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완료된
	<u>날로부터 6개월</u> -----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② 치유희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u> ③ · ④ (생략)	----- . <u>다만, 의사의 소견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치유희직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치유희직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